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8회 임시회(2020. 5.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40
----------	-------

2020. 5. 20.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채우진 의원 외 7 인
- 나. 제 안 일 : 2020. 5. 13.
- 다. 회 부 일 : 2020. 5. 13.

2.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정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복지 증진 및 마포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마포구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기후변화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산림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기후변화대응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0. 5. 13.~ 5. 17.(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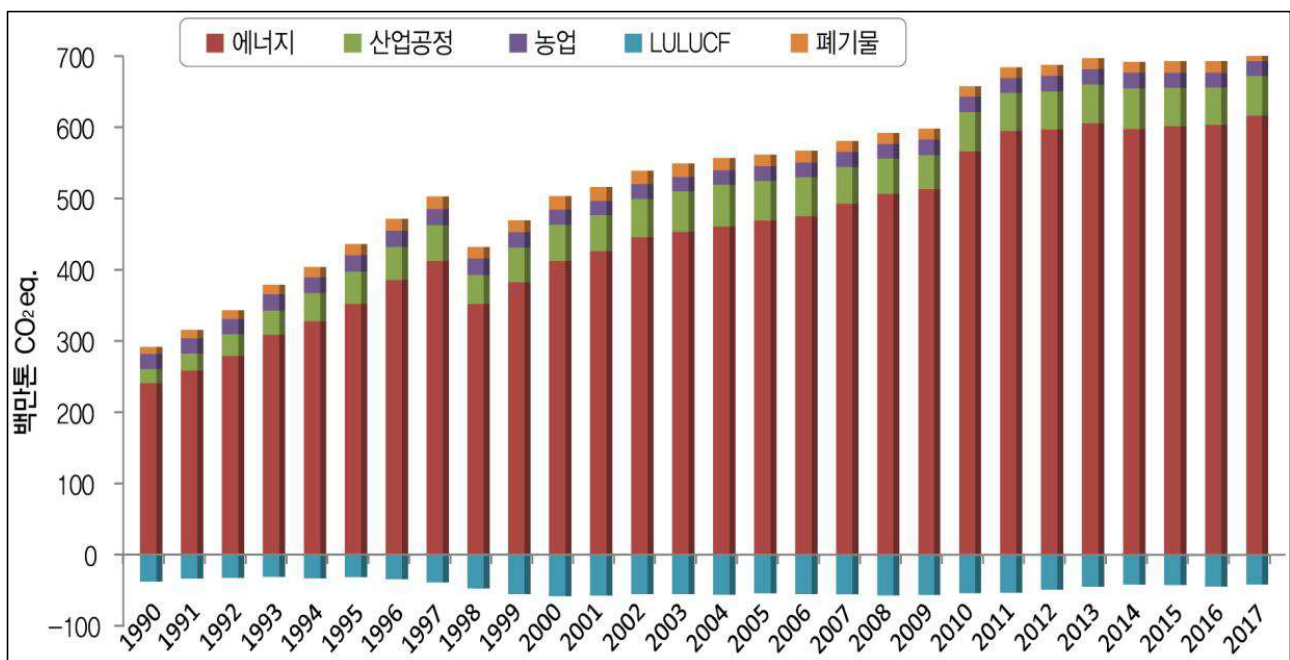
-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우·폭설·폭염이 일상화가 되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추진과 적극적인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이행 상황 평가까지 다루고 있음.
- 조문별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 저탄소 녹색 성장 국가전략’ 사항으로서 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보임.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범정부적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정책적·실천적 노력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¹⁾에 대비하여 도시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상화된 한파·폭염 등의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저유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간의 추진동력은 약화되고 있음.



<표.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7)>²⁾

-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기

1)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많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2℃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높은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설정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발도상국 등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체제(출처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1.3.. 이강원, 손호웅)

2)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中(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후변화 대응 대책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구는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별(건물·제조·건설·수송분야 등)로 구분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또한, 구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실천의제 및 지표를 선정하고 각종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활동은 상설화 하고,
-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한 사업도 병행, 발굴·지원하여 마포구를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겠음.

[관 계 법 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5조(자치구의 책무) ① 자치구는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자치구는 기후변화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